

광주지방법원 2024. 12. 3 선고 2024가단5665 판결 [건물명도 등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 2024. 11. 19.

판결 선고 2024. 12. 3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2층 104.34㎡ 중 별지 도면표시 ①, ②, ③, ④,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23㎡(C호)를 인도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채승원

별지